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541-01



아동학대 주요통계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23



2023



보건복지부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일러두기

통계표의 모든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통계표 내의
합계, 증감 등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음

제1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2
1. 신고접수	2
1) 신고접수	2
2) 시·도별 신고접수	3
2. 신고자 유형	4
1) 신고자 유형	4
2) 시·도별 신고자 유형	6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8
1. 사례판단 결과	8
2. 피해아동 발견율	9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10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0
1) 피해아동	10
가. 피해아동 성별	10
나. 피해아동 연령	11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12
2) 학대행위자	13
가. 학대행위자 성별	13
나. 학대행위자 연령	14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5
2. 아동학대사례 발생 현황	17
1) 아동학대 발생장소	17

3. 아동학대사례 유형	18
1) 아동학대사례 유형	18
2) 아동학대사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9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9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0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
4.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황	21
1) 피해아동 상황	21
가. 피해아동 전체 사례종결 현황	21
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23
2) 학대행위자 상황	25
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26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32
5. 서비스 제공 현황	34
6. 재학대 사례	36
1) 재학대 사례 현황	36
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36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36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37
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38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38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39
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9
5)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	41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41
6)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황	42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42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상황	43

제4절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44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44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44
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48
4)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48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49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0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52

제2장 아동학대 사례분석

제1절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	54
1. 아동학대 사망사례 현황	54
1)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일반적 특성	55
가. 사망사례 피해아동 성별	55
나. 사망사례 피해아동 연령	55
다. 사망사례 피해아동 교육기관	56
라.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57
2)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일반적 특성	58
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58
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58
3)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9
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 여부	59
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59

4) 사망사례 발생 현황	61
가. 사망사례 지역별 발생 현황	61
나. 사망사례 신고자 유형	62
5) 사망사례 아동학대 유형	63
6)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사건처리) 결과	63

참고문헌	66
------	----

부 록	67
-----	----

제1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2
〈표 1-1-1〉 신고접수 건수	2
〈표 1-1-2〉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	3
〈표 1-1-3〉 신고자 유형	4
〈표 1-1-4〉 시·도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6
〈표 1-1-5〉 시·도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7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8
〈표 1-2-1〉 사례판단 결과	8
〈표 1-2-2〉 피해아동 발견율	9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10
〈표 1-3-1〉 피해아동 성별	10
〈표 1-3-2〉 피해아동 연령	11
〈표 1-3-3〉 피해아동 가족유형	12
〈표 1-3-4〉 학대행위자 성별	13
〈표 1-3-5〉 학대행위자 연령	14
〈표 1-3-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5
〈표 1-3-7〉 아동학대 발생장소	17
〈표 1-3-8〉 아동학대사례 유형	18
〈표 1-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9
〈표 1-3-1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0
〈표 1-3-1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
〈표 1-3-12〉 피해아동 전체 사례종결 현황	21
〈표 1-3-13〉 피해아동 상황 - 보호조치 유형별	21
〈표 1-3-14〉 피해아동 상황 - 분리보호 유형별	22
〈표 1-3-15〉 피해아동 상황 - 분리보호 후 보호 상황	22

〈표 1-3-16〉 피해아동 상황 - 즉각분리(유형별 포함)	22
〈표 1-3-17〉 피해아동 상황 - 즉각분리 후 보호 상황	23
〈표 1-3-18〉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23
〈표 1-3-19〉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24
〈표 1-3-20〉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24
〈표 1-3-21〉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지	25
〈표 1-3-22〉 학대행위자 상황	25
〈표 1-3-23〉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상황	25
〈표 1-3-24〉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26
〈표 1-3-25〉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26
〈표 1-3-26〉 임시조치 결정 현황	28
〈표 1-3-27〉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30
〈표 1-3-28〉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1)	32
〈표 1-3-29〉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2)	33
〈표 1-3-30〉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34
〈표 1-3-31〉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중복포함)	35
〈표 1-3-32〉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3개년)	36
〈표 1-3-3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36
〈표 1-3-3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37
〈표 1-3-3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38
〈표 1-3-3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39
〈표 1-3-3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40
〈표 1-3-38〉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41
〈표 1-3-39〉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 보호조치 유형별	42
〈표 1-3-40〉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 분리보호 유형별	43
〈표 1-3-4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 분리보호 후 보호상황	43
〈표 1-3-4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상황	43

제4절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44
〈표 1-4-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44
〈표 1-4-2〉 연도별 신고자 유형	45
〈표 1-4-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48
〈표 1-4-4〉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48
〈표 1-4-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49
〈표 1-4-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0
〈표 1-4-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52

제2장

아동학대 사례분석

제1절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	54
〈표 2-1-1〉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 현황	54
〈표 2-1-2〉 사망사례 피해아동 성별	55
〈표 2-1-3〉 사망사례 피해아동 연령	55
〈표 2-1-4〉 사망사례 피해아동 교육기관	56
〈표 2-1-5〉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57
〈표 2-1-6〉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58
〈표 2-1-7〉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58
〈표 2-1-8〉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 여부	59
〈표 2-1-9〉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60
〈표 2-1-10〉 사망사례 지역별 발생 현황	61
〈표 2-1-11〉 사망사례 신고자 유형	62
〈표 2-1-12〉 사망사례 아동학대 유형	63
〈표 2-1-13〉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사건처리) 결과	64

제1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2
[그림 1-1-1] 신고접수 건수	2
[그림 1-1-2] 신고자 유형	5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8
[그림 1-2-1] 사례판단 결과	8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10
[그림 1-3-1] 피해아동 성별	10
[그림 1-3-2] 피해아동 연령	12
[그림 1-3-3] 피해아동 가족유형	13
[그림 1-3-4] 학대행위자 성별	13
[그림 1-3-5] 학대행위자 연령	14
[그림 1-3-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6
[그림 1-3-7] 아동학대사례 유형	19
[그림 1-3-8]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24
[그림 1-3-9]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27
[그림 1-3-10]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29
[그림 1-3-11]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31
[그림 1-3-1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37
[그림 1-3-1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38
[그림 1-3-1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38
[그림 1-3-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39
[그림 1-3-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41
[그림 1-3-17]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	42

제1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제4절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제1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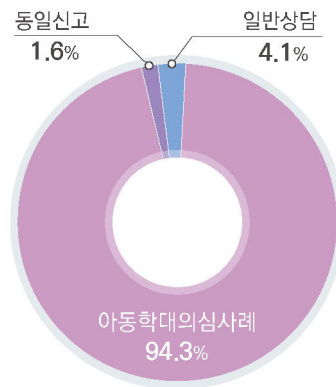
1) 신고접수

2023년 집계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48,522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45,771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4.3%, 그외 동일신고가 753건(1.6%), 일반상담이 1,997건(4.1%)이었다.

〈표 1-1-1〉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사례	계
45,771	753	1,997	1	48,522
(94.3)	(1.6)	(4.1)	(0.0)	(100.0)



[그림 1-1-1] 신고접수 건수

*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내용(동일시점 및 동일행위)에 대한 신고가 다른 신고자를 통해 접수

2) 시·도별 신고접수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의 경우(아동학대의심사례 기준) 경기 12,990건(28.4%), 서울 6,397건(14.0%) 순으로 높았으며, 낮은 순으로는 세종 321건(0.7%), 광주가 842건(1.8%)으로 나타났다.

〈표 1-1-2〉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시·도	아동학대의심사례	
서울	6,397	(14.0)
부산	2,641	(5.8)
대구	1,801	(3.9)
인천	3,376	(7.4)
광주	842	(1.8)
대전	1,603	(3.5)
울산	2,082	(4.6)
세종	321	(0.7)
경기	12,990	(28.4)
강원	1,417	(3.1)
충북	1,304	(2.9)
충남	2,148	(4.7)
전북	1,597	(3.5)
전남	1,922	(4.2)
경북	1,933	(4.2)
경남	2,553	(5.6)
제주	844	(1.8)
총계	45,771	(100.0)

2. 신고자 유형

1)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45,771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았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2,553건(27.4%)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초·중·고교 직원이 5,307건(11.6%)으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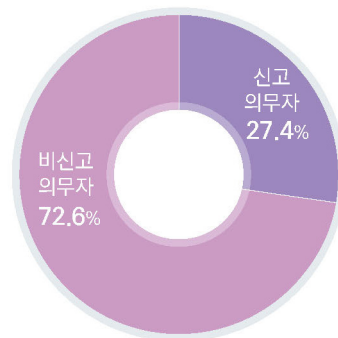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33,218건(72.6%)이었으며, 부모 13,946건(30.5%), 아동본인 11,399건(2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3〉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5,307	(11.6)	아동본인	11,399	(24.9)
의료인·의료기사	447	(1.0)	부모	13,946	(30.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577	(1.3)	형제, 자매	782	(1.7)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8	(0.1)	친인척	688	(1.5)
보육교직원	160	(0.4)	이웃·친구	3,079	(6.7)
유치원교직원·강사	178	(0.4)	경찰	276	(0.6)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46	(0.1)	종교인	11	(0.0)
소방구급대원	42	(0.1)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355	(0.8)
성매매피해시설상담 종사자	2	(0.0)	의료사회복지사	6	(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10	(0.0)	낯선사람	962	(2.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84	(0.2)	익명	252	(0.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58	(0.4)	법원	55	(0.1)
아동권리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22	(0.1)	기타	1,407	(3.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330	(5.1)			
아동복지전담공무원	2,103	(4.6)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621	(1.4)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29	(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24	(0.1)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30	(0.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25	(0.1)			
응급구조사	1	(0.0)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109	(0.2)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종사자	112	(0.2)			
아이돌보미	20	(0.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65	(0.1)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2	(0.0)			
입양기관 종사자	1	(0.0)			
소계	12,553	(27.4)	소계	33,218	(72.6)
계			45,771		



[그림 1-1-2] 신고자 유형

2) 시·도별 신고자 유형

〈표 1-1-4〉 시·도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시·도 신고자 유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초·중·고교 직원	548	415	241	362	104	127	194	27	1,096	278	331	285	305	206	325	378	85	5,307
의료인·의료기사	72	20	20	27	12	10	6	1	138	16	13	21	19	12	21	28	11	44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68	30	19	34	15	19	52	1	138	23	18	38	15	36	34	31	6	557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8	3	5	3	1	0	0	0	11	7	0	0	1	1	8	0	0	48
보육교직원	28	5	1	16	0	5	0	4	55	6	5	7	9	6	5	7	1	160
유치원교직원· 강사	26	9	4	11	1	2	4	6	38	13	18	11	4	5	9	16	1	178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0	7	0	1	1	0	4	0	16	1	0	1	1	1	1	2	0	46
소방구급대원	4	1	1	7	7	3	0	0	1	0	4	8	2	0	3	1	0	42
성매매피해시설 상담 종사자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2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3	3	0	0	0	0	0	0	2	0	0	0	2	0	0	0	0	1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2	0	2	3	1	1	13	1	9	7	0	2	5	10	18	7	3	8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	7	4	16	2	8	6	1	32	8	3	11	2	1	12	15	0	158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4	1	0	2	2	0	1	0	9	0	2	0	0	0	1	0	0	2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61	106	182	314	95	112	22	12	698	86	31	61	227	23	66	111	23	2,330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157	126	81	315	39	72	29	19	558	143	26	61	146	116	93	89	33	2,103
아동보호 전문기관장과 종사자	34	19	10	41	10	30	35	7	237	30	8	10	49	26	31	25	19	621
건강가정지원 센터 종사자	2	3	5	3	0	0	0	0	0	0	1	2	3	2	4	3	1	29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1	2	3	1	1	2	0	0	1	0	3	1	0	0	2	2	5	24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0	5	2	8	0	0	0	0	4	1	1	0	2	1	4	2	0	30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2	0	2	1	3	0	0	0	3	0	1	0	0	0	8	3	2	25

시·도 신고자 유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응급구조사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16	12	6	12	1	3	1	0	20	0	4	4	11	4	3	12	0	109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17	26	5	3	2	1	4	5	16	3	0	4	5	4	4	10	3	112
아이돌보미	3	2	2	3	0	0	1	0	2	1	0	0	1	1	2	2	0	2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3	15	1	1	0	0	0	1	13	5	0	4	5	7	10	0	0	65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2
입양기관 종사자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소 계	1,201	817	596	1,185	298	395	372	85	3,098	628	469	531	814	462	664	744	194	12,553

〈표 1-1-5〉 시·도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시·도 비신고자 유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아동본인	1,745	616	499	698	204	435	528	97	3,323	282	314	594	252	473	441	662	236	11,399
부모	2,266	777	448	990	237	493	846	100	4,056	336	275	683	309	686	467	732	245	13,946
형제, 자매	110	37	35	52	17	14	60	5	232	17	27	32	15	34	37	45	13	782
친인척	92	42	23	36	14	34	59	0	186	19	33	39	6	22	29	31	23	688
이웃·친구	515	161	65	199	43	168	130	21	946	71	95	127	52	135	166	144	41	3,079
경찰	50	9	3	42	1	5	15	0	91	5	4	4	8	11	11	17	0	276
종교인	5	0	0	0	0	1	0	0	5	0	0	0	0	0	0	0	0	11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20	10	8	5	0	4	0	0	222	1	2	6	54	8	11	4	0	355
의료사회복지사	1	0	0	0	0	3	0	0	0	0	0	1	1	0	0	0	0	6
낯선사람	169	56	55	72	16	24	42	2	274	17	30	40	33	31	30	51	20	962
익명	35	15	14	10	5	6	14	1	60	13	8	5	4	13	9	25	15	252
법원	3	11	1	9	1	0	1	0	13	1	0	3	2	3	2	5	0	55
기타	185	90	54	78	6	21	15	10	484	27	47	83	47	44	66	93	57	1,407
소계	5,196	1,824	1,205	2,191	544	1,208	1,710	236	9,892	789	835	1,617	783	1,460	1,269	1,809	650	33,218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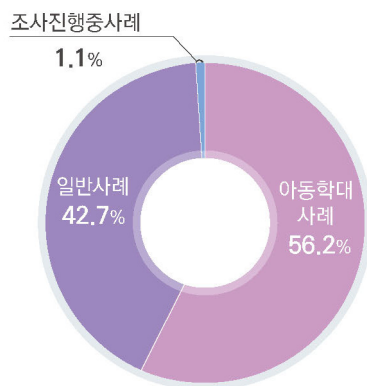
1. 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의심사례 45,771건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25,739건(56.2%), 일반사례 19,530건(42.7%), 조사진행중사례는 502건(1.1%)으로 나타났다.

〈표 1-2-1〉 사례판단 결과

(단위 : 건, %)

아동학대사례	일반사례	조사진행중사례	계
25,739	19,530	502	45,771
(56.2)	(42.7)	(1.1)	(100.0)



[그림 1-2-1] 사례판단 결과

2. 피해아동 발견율

추계 아동 인구(0세~17세)를 기준으로 피해아동 발견율은 3.64%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8.06%, 전라남도 5.34%, 강원특별자치도 4.7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광역시 2.13%, 세종특별자치시 2.22%, 서울특별시 2.59%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 명, 건, %)

지 역	추계아동인구* (0~17세)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 당)
서울특별시	1,069,644	2,766	2.59
부산광역시	402,108	1,309	3.26
대구광역시	319,865	1,133	3.54
인천광역시	423,655	1,875	4.43
광주광역시	220,954	470	2.13
대전광역시	206,588	731	3.54
울산광역시	169,901	1,369	8.06
세종특별자치시	85,565	190	2.22
경기도	2,059,291	7,612	3.70
강원특별자치도	193,577	919	4.75
충청북도	221,164	764	3.45
충청남도	312,412	1,363	4.36
전북특별자치도	234,526	1,035	4.41
전라남도	234,998	1,254	5.34
경상북도	331,860	1,099	3.31
경상남도	473,199	1,351	2.86
제주특별자치도	109,989	499	4.54
계	7,069,296	25,739	3.64

* 통계청(2023).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http://www.kosis.kr>.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 피해아동

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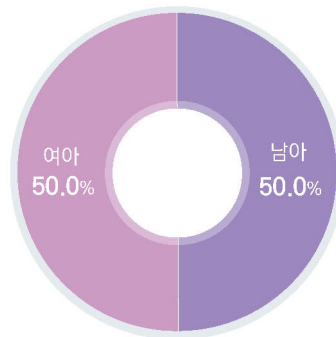
아동학대로 판단된 25,739건 중 남아가 12,878건(50.0%), 여아가 12,861건(50.0%)으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1〉 피해아동 성별

(단위: 건, 명, %)

구분	남아		여아		계	
건수(비율)	12,878	(50.0)	12,861	(50.0)	25,739	(100.0)
명수(비율)	10,051	(50.0)	9,896	(50.0)	19,947	(100.0)

※ 아동학대사례 25,739건에는 동일한 아동이 두 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이거나, 혹은 동일한 아동이 두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아동 건수와 명수는 일치하지 않음.



[그림 1-3-1] 피해아동 성별

나. 피해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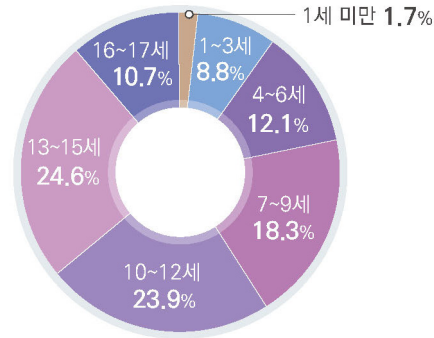
피해아동의 연령의 경우, 13~15세가 6,328건(2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10~12세 6,141건(23.9%), 7~9세 4,713건(1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2〉 피해아동 연령

(단위: 건, 명, %)

연령	건수(비율)		명수(비율)	
1세 미만	442	(1.7)	291	(1.5)
1세	578	(2.3)	367	(1.8)
2세	775	(3.0)	516	(2.6)
3세	900	(3.5)	617	(3.1)
소계	2,253	(8.8)	1,500	(7.5)
4세	970	(3.8)	671	(3.4)
5세	964	(3.8)	677	(3.4)
6세	1,182	(4.6)	824	(4.1)
소계	3,116	(12.1)	2,172	(10.9)
7세	1,416	(5.5)	1,048	(5.3)
8세	1,652	(6.4)	1,224	(6.1)
9세	1,645	(6.4)	1,257	(6.3)
소계	4,713	(18.3)	3,529	(17.7)
10세	1,848	(7.2)	1,432	(7.2)
11세	2,073	(8.1)	1,602	(8.0)
12세	2,220	(8.6)	1,792	(9.0)
소계	6,141	(23.9)	4,826	(24.2)
13세	2,222	(8.6)	1,808	(9.1)
14세	2,173	(8.4)	1,817	(9.1)
15세	1,933	(7.5)	1,619	(8.1)
소계	6,328	(24.6)	5,244	(26.3)
16세	1,591	(6.2)	1,365	(6.8)
17세	1,155	(4.5)	1,020	(5.1)
소계	2,746	(10.7)	2,385	(12.0)
계	25,739	(100.0)	19,947	(100.0)

※ 아동학대사례 25,739건에는 동일한 아동이 두 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이거나, 혹은 동일한 아동이 두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아동 건수와 명수는 일치하지 않음.



[그림 1-3-2] 피해아동 연령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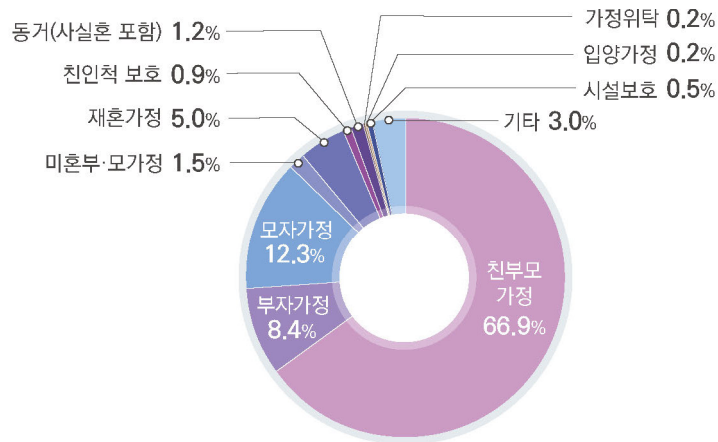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피해아동 가족유형의 경우, 친부모가정 17,218건(66.9%), 모자가정 3,171건(12.3%), 부자가정 2,168건(8.4%), 재혼가정 1,298건(5.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3〉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친부모 가정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	기타	계
17,218	2,168	3,171	383	1,298	232	296	43	46	122	762	25,739
(66.9)	(8.4)	(12.3)	(1.5)	(5.0)	(0.9)	(1.2)	(0.2)	(0.2)	(0.5)	(3.0)	(100.0)

- 친부모가정: 혼인절차에 의한 부모와 부모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부자·모자가정: 부모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미혼부·모가정: 혼인절차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재혼가정: 이혼 혹은 사별 이후 혼인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가족 형태
- 친인척보호가정: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게 보호되는 가족 형태
- 동거(사실혼 포함): 혼인신고 없이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형태
- 가정위탁: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형태
- 입양가정: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모-양자의 관계를 맺은 가족 형태
- 시설보호: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형태



[그림 1-3-3] 피해아동 가족유형

2) 학대행위자

가. 학대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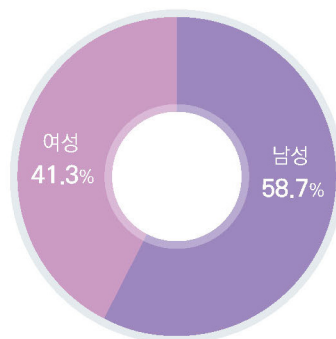
아동학대로 판단된 25,739건 중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 15,107건(58.7%), 여성 10,632건(41.3%)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보고되었다.

〈표 1-3-4〉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명, %)

구분	남성		여성		계	
건수(비율)	15,107	(58.7)	10,632	(41.3)	25,739	(100.0)
명수(비율)	10,478	(59.2)	7,227	(40.8)	17,705	(100.0)

※ 아동학대사례 25,739건에는 동일한 학대행위자가 한 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이거나, 혹은 동일한 행위자가 한 명 이상의 피해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대행위자 건수와 명수는 일치하지 않음.



[그림 1-3-4] 학대행위자 성별

나.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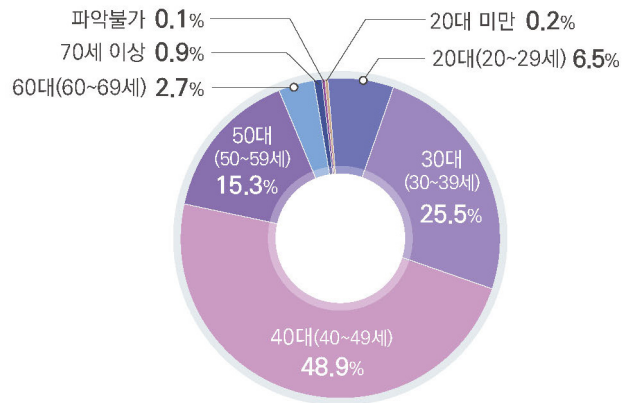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가 12,574건(4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6,561건(25.5%), 50대 3,937건(15.3%), 20대 1,681건(6.5%), 60대 693건(2.7%), 70세 이상 219건(0.9%), 20대 미만 61건(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5〉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건, 명, %)

연령	건수(비율)		명수(비율)	
20대 미만	61	(0.2)	53	(0.3)
20대(20~29세)	1,681	(6.5)	1,172	(6.6)
30대(30~39세)	6,561	(25.5)	4,098	(23.1)
40대(40~49세)	12,574	(48.9)	8,739	(49.4)
50대(50~59세)	3,937	(15.3)	2,957	(16.7)
60대(60~69세)	693	(2.7)	499	(2.8)
70세 이상	219	(0.9)	174	(1.0)
파악불가	13	(0.1)	13	(0.1)
계	25,739	(100.0)	17,705	(100.0)

※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발생할 수 있음.



[그림 1-3-5] 학대행위자 연령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 건수가 22,106건(85.9%)으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1,874건(7.3%), 타인 846건(3.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12,414건(48.2%), 친모가 8,921건(34.7%)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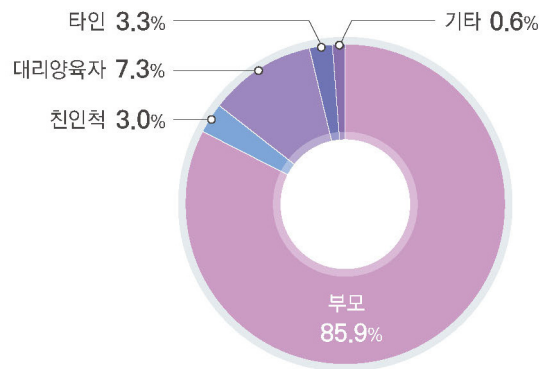
〈표 1-3-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 계		건수(비율)	
부모	친부	12,414	(48.2)
	친모	8,921	(34.7)
	계부	511	(2.0)
	계모	220	(0.9)
	양부	24	(0.1)
	양모	16	(0.1)
	소계	22,106	(85.9)
친인척	친조부	103	(0.4)
	친조모	146	(0.6)
	외조부	81	(0.3)
	외조모	118	(0.5)
	친인척	209	(0.8)
	형제, 자매	114	(0.4)
	소계	771	(3.0)
대리양육자*	부, 모의 동거인	190	(0.7)
	유치원교직원	59	(0.2)
	초·중·고교 직원	793	(3.1)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259	(1.0)
	보육교직원	356	(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29	(0.5)
	기타시설 종사자	50	(0.2)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3	(0.0)
	위탁부	2	(0.0)
	위탁모	3	(0.0)
	아이돌보미	30	(0.1)
	소계	1,874	(7.3)

* '대리양육자'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대신 양육해주는 사람

관 계		건수(비율)	
타인	이웃	178	(0.7)
	낯선사람	668	(2.6)
	소계	846	(3.3)
기타		142	(0.6)
계		25,739	(100.0)



[그림 1-3-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 아동학대사례 발생 현황

1) 아동학대 발생장소

아동학대 발생장소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1,336건(8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중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0,659건(80.3%)이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이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각각 382건(1.5%), 62건(0.2%), 889건(3.5%)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 154건(0.6%), 기타복지시설이 55건(0.2%)으로 전체 사례 중 0.8%였다.

〈표 1-3-7〉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수(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20,659	(80.3)
	학대행위자 가정 내	677	(2.6)
소계		21,336	(82.9)
집근처 또는 길가		1,809	(7.0)
친척집		161	(0.6)
이웃집		55	(0.2)
어린이집		382	(1.5)
유치원		62	(0.2)
학교		889	(3.5)
학원		250	(1.0)
병원		40	(0.2)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154	(0.6)
	기타복지시설	55	(0.2)
숙박업소		129	(0.5)
종교시설		27	(0.1)
기타		390	(1.5)
계		25,739	(100.0)

3. 아동학대사례 유형

1)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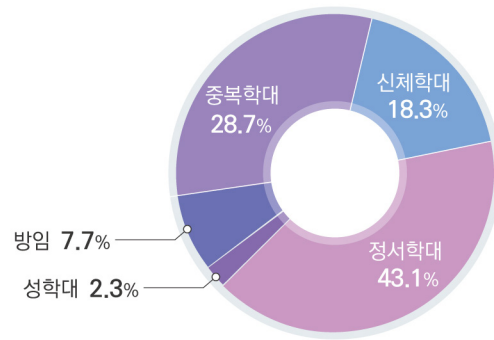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학대가 11,094건(43.1%), 중박학대 7,383건(28.7%), 신체학대 4,698건(18.3%), 방임 1,979건(7.7%), 성학대 585건(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박학대 중에서는 신체학대·정서학대가 6,330건(24.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정서학대·방임 456건(1.8%),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251건(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8〉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4,698	(18.3)
정서학대		11,094	(43.1)
성학대		585	(2.3)
방임		1,979	(7.7)
중박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6,330	(24.6)
	신체학대·성학대	13	(0.1)
	신체학대·방임	123	(0.5)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39	(0.2)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251	(1.0)
	신체학대·성학대·방임	0	(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22	(0.1)
	정서학대·성학대	141	(0.6)
	정서학대·방임	456	(1.8)
	정서학대·성학대·방임	7	(0.0)
	성학대·방임	1	(0.0)
	소계	7,383	(28.7)
계		25,739	(100.0)



[그림 1-3-7] 아동학대사례 유형

2) 아동학대사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에 따른 피해아동 성별, 연령,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남아와 여아 모두 정서학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남아의 경우 신체학대가, 여아의 경우 성학대가 다른 성별에 비해 아동학대사례 유형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성별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계	
남	6,208	(36.9)	9,019	(53.6)	86	(0.5)	1,515	(9.0)	16,828	(100.0)
여	5,268	(31.7)	9,321	(56.0)	722	(4.3)	1,324	(8.0)	16,635	(100.0)
계	11,476	(34.3)	18,340	(54.8)	808	(2.4)	2,839	(8.5)	33,463	(100.0)

※ 중복포함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모든 연령대에서 정서학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아동학대사례 유형중에서 신체학대와 성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방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1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연령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계	
1세 미만	87	(17.6)	239	(48.4)	0	(0.0)	168	(34.0)	494	(100.0)
1~3세	529	(19.9)	1,680	(63.1)	3	(0.1)	451	(17.0)	2,663	(100.0)
4~6세	911	(23.9)	2,417	(63.5)	15	(0.4)	465	(12.2)	3,808	(100.0)
7~9세	1,895	(31.5)	3,438	(57.2)	73	(1.2)	608	(10.1)	6,014	(100.0)
10~12세	2,837	(35.2)	4,380	(54.3)	229	(2.8)	617	(7.7)	8,063	(100.0)
13~15세	3,600	(41.7)	4,310	(49.9)	315	(3.7)	416	(4.8)	8,641	(100.0)
16~17세	1,617	(42.8)	1,876	(49.6)	173	(4.6)	114	(3.0)	3,780	(100.0)
계	11,476	(34.3)	18,340	(54.8)	808	(2.4)	2,839	(8.5)	33,463	(100.0)

※ 중복포함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모든 학대행위자 유형에서 정서학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정서학대의 비중이 다른 학대행위자 유형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3-1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계	
부 모	9,863	(34.3)	16,058	(55.9)	184	(0.6)	2,629	(9.2)	28,734	(100.0)
친인척	435	(43.5)	464	(46.4)	33	(3.3)	68	(6.8)	1,000	(100.0)
대리양육자	928	(36.1)	1,257	(49.0)	247	(9.6)	136	(5.3)	2,568	(100.0)
기타	250	(21.5)	561	(48.3)	344	(29.6)	6	(0.5)	1,161	(100.0)
계	11,476	(34.3)	18,340	(54.8)	808	(2.4)	2,839	(8.5)	33,463	(100.0)

※ 중복포함

4.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황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의 분리보호 여부 등을 나타내는 피해아동 상황, 학대피해아동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학대행위자의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를 포함한 학대행위자 상황, 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결과를 살펴보았다.

1) 피해아동 상황

피해아동의 상황은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피해아동 전체 사례종결 현황

2023년 아동학대사례 25,739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7,408건(28.8%), 서비스 지원 등의 개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는 18,331건(71.2%)으로 나타났다.

〈표 1-3-12〉 피해아동 전체 사례종결 현황

(단위: 건, %)

사례종결		진행중		계	
7,408	(28.8)	18,331	(71.2)	25,739	(100.0)

2023년 아동학대사례 25,739건을 바탕으로 보호조치 여부 등 피해아동 상황을 살펴보고, 최초 분리보호 시 분리된 장소 유형과 분리된 이후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였다. 보호조치 유형별 피해아동의 상황을 보면, 원가정보호가 23,214건(9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3-13〉 피해아동 상황 - 보호조치 유형별

(단위: 건, %)

피해아동 상황		
원가정보호(보호체계 유지)	23,214	(90.2)
분리보호(보호체계 변경)	2,393	(9.3)
기타	132	(0.5)
계	25,739	(100.0)

피해아동이 분리보호 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한 번이라도 분리된 경험이 있는 사례에서 피해아동이 최초 보호되는 장소유형을 살펴보니, 시설입소하여 보호하는 경우가 82.0%로 가장 높았고, 친족보호 15.5%, 가정위탁 1.5%,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1.0% 순이었다.

〈표 1-3-14〉 피해아동 상황 - 분리보호 유형별

(단위: 건, %)

분리보호 (보호체계 변경)	친족보호	371	(15.5)
	가정위탁	35	(1.5)
	시설입소	1,962	(82.0)
	입양	0	(0.0)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25	(1.0)
계		2,393	(100.0)

피해아동이 분리보호 된 이후 가정복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분리보호 된 아동 사례 2,393건 중 325건(13.6%)은 가정복귀 하였고, 2,068건(86.4%)은 지속해서 분리보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15〉 피해아동 상황 - 분리보호 후 보호 상황

(단위: 건, %)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325	(13.6)
분리보호 (보호체계 변경)	친족보호	398	(16.6)
	가정위탁	54	(2.3)
	시설입소	1,588	(66.4)
	입양	0	(0.0)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28	(1.2)
	소계	2,068	(86.4)
계		2,393	(100.0)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분리로 분리보호된 피해아동 현황을 살펴보았다. 즉각분리를 통해 분리된 아동은 총 1,431건으로, 세부 보호유형은 시설입소 1,186건(82.9%), 친족보호 218건(15.2%) 순이다.

〈표 1-3-16〉 피해아동 상황 - 즉각분리(유형별 포함)

(단위: 건, %)

즉각분리 (일시보호조치)	친족보호	218	(15.2)
	가정위탁	25	(1.8)
	시설입소	1,186	(82.9)
	입양	0	(0.0)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2	(0.1)
계		1,431	(100.0)

즉각분리로 보호된 1,431건 중 174건(12.2%)은 가정복귀하였고, 1,257건(87.8%)은 지속해서 분리보호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17〉 피해아동 상황 - 즉각분리 후 보호 상황

(단위 : 건, %)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174	(12.2)
분리보호 (지속)	친족보호	242	(16.9)
	가정위탁	39	(2.7)
	시설입소	971	(67.9)
	입양	0	(0.0)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5	(0.4)
	소계	1,257	(87.8)
계		1,431	(100.0)

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피해아동에게 숙식뿐 아니라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① 2023년도 피해아동 입·퇴소 현황

2023년 전국 총 144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총 909명의 아동을 보호하였다. 이 중 2023년 이전에 입소하여 2023년도에도 보호를 받은 아동의 수는 505명(55.6%)이었고, 2023년도에 입소한 아동은 404명(44.4%)이었다.

〈표 1-3-18〉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단위 : 명, %)

	2023년 이전 입소아동		2023년 입소아동		총 보호아동	
아동 수	505	(55.6)	404	(44.4)	909	(100.0)

2023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아동 909명 중 퇴소한 아동은 396명(43.6%)이었고,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513명(56.4%)이었다.

〈표 1-3-19〉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단위 : 명, %)

	퇴소 아동		재원 아동		총 보호아동	
아동 수	396	(43.6)	513	(56.4)	909	(100.0)

② 2023년도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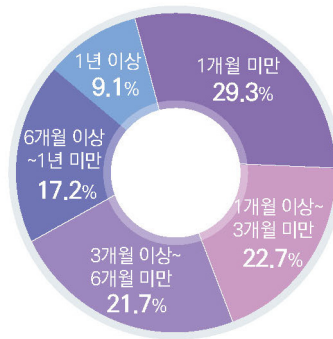
2023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 총 396명 기준 퇴소 아동들의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 거주한 아동이 116명(2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0명(22.7%),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6명(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20〉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단위 : 명, %)

거주 기간	명수(비율)	
1개월 미만	116	(29.3)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90	(22.7)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86	(21.7)
6개월 이상 ~ 1년 미만	68	(17.2)
1년 이상	36	(9.1)
계	396	(100.0)

※ 퇴소 아동 396명 기준



[그림 1-3-8]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③ 2023년도 퇴소 아동의 거주지

2023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의 거주지는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이 233명(58.8%)으로 가장 많았다. 타 시설로 입소한 아동 118명(29.8%), 가정위탁 13명(3.3%), 친족(친인척)보호된 아동은 8명(2.0%)으로 나타났다.

〈표 1-3-21〉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단위 : 명, %)

퇴소 후 거주지	명수(비율)	
원가정 복귀	233	(58.8)
친족(친인척)보호	8	(2.0)
가정위탁	13	(3.3)
타 시설입소	118	(29.8)
기타	24	(6.1)
계	396	(100.0)

※ 퇴소 아동 396명 기준

2) 학대행위자 상황

2023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25,739건을 바탕으로 학대행위자 상황 중 사례관리와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례관리는 14,270건, 고소·고발 등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한 경우는 총 11,469건이었다.

〈표 1-3-22〉 학대행위자 상황

(단위 : 건)

아동학대사건 건수	사건처리	사례관리
25,739	11,469	14,270

아동학대사건 유형별 학대행위자 상황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의 경우 정서학대 7,713건(50.0%), 신체학대 5,876건(38.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23〉 아동학대사건 유형별 학대행위자 상황

(단위 : 건,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5,876	(38.1)	7,713	(50.0)	623	(4.0)	1,226	(7.9)	15,438	(100.0)

※ 중복포함

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본 절에서는 2023년 아동학대사례 중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조치 현황을 집계하였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25,739건 중 2,495건(9.7%)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조치되었다.

〈표 1-3-24〉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단위 : 건, %)

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25,739	2,495	9.7

①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피해아동 응급조치는 총 1,550건으로 대부분 경찰이 실시하였다(1,379건, 89.0%). 전체 응급조치 내용 중 가장 많이 조치한 내용은 1호(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로 863건(40.9%)이었고, 다음으로 2호(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624건(2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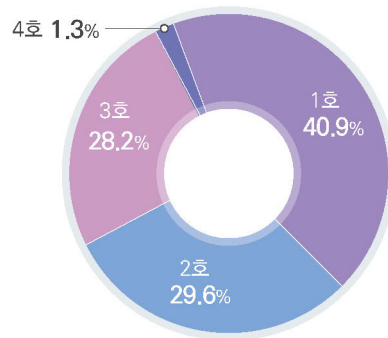
〈표 1-3-25〉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단위 : 건, %)

분류	건수		조치 내용									
			1호		2호		3호		4호		계 (중복집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71	(11.0)	24	(11.7)	54	(26.2)	122	(59.2)	6	(2.9)	206	(100.0)
경찰	1,379	(89.0)	839	(44.1)	570	(30.0)	473	(24.9)	21	(1.1)	1,903	(100.0)
계	1,550	(100.0)	863	(40.9)	624	(29.6)	595	(28.2)	27	(1.3)	2,109	(100.0)

-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3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의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입력 후 수정·보완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경찰청 통계와는 다를 수 있음



[그림 1-3-9]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② 임시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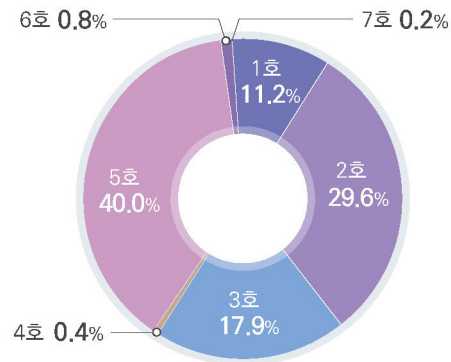
임시조치 최종결정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아동·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시군구청장이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한 경우,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을 통해 임시조치가 인용된 사례는 총 2,984건(98.7%)에 해당하고, 청구가 기각된 사례는 38건(1.3%)이었다. 임시조치 인용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조치 5호(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상담 및 교육 위탁)가 2,134건(40.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가 1,582건(29.6%)으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 금지)조치 중에서는 주거, 학교 및 학원으로의 접근 금지 조치가 가장 많았다.

〈표 1-3-26〉 임시조치 결정 현황

(단위 : 건, %)

신청인	인용 건수	가각 건수	총 건수	인용 세부 내용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결정계 (중복 집계)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계 (중복 집계)	소계 (중복 제외)						
검사	794	6	800	165	258	245	0	10	31	544	385	251	5	583	17	4	1,410
	(99.3)	(0.8)	(100.0)	(11.7)	(47.4)	(45.0)	(0.0)	(1.8)	(5.7)	(100.0)	(27.3)	(17.8)	(0.4)	(41.4)	(1.2)	(0.3)	(100.0)
사법 경찰관	1,835	26	1,861	380	640	606	0	27	65	1,338	1,015	613	11	1,305	24	4	3,352
	(98.6)	(1.4)	(100.0)	(11.3)	(47.8)	(45.3)	(0.0)	(2.0)	(4.9)	(100.0)	(30.3)	(18.3)	(0.3)	(38.9)	(0.7)	(0.1)	(100.0)
시·군· 구청장	30	0	30	1	8	5	0	1	0	14	9	9	0	23	2	0	44
	(100.0)	(0.0)	(100.0)	(2.3)	(57.1)	(35.7)	(0.0)	(7.1)	(0.0)	(100.0)	(20.5)	(20.5)	(0.0)	(52.3)	(4.6)	(0.0)	(100.0)
변호사	0	4	4	0	0	4	0	0	0	4	4	4	0	0	0	0	8
	(0.0)	(100.0)	(100.0)	(0.0)	(0.0)	(100.0)	(0.0)	(0.0)	(0.0)	(100.0)	(50.0)	(50.0)	(0.0)	(0.0)	(0.0)	(0.0)	(100.0)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2	2	4	1	1	1	0	0	0	2	1	0	1	2	0	0	5
	(50.0)	(50.0)	(100.0)	(20.0)	(50.0)	(50.0)	(0.0)	(0.0)	(0.0)	(100.0)	(20.0)	(0.0)	(20.0)	(40.0)	(0.0)	(0.0)	(100.0)
피해아동	23	0	23	0	5	6	0	1	3	15	12	2	0	18	0	0	32
	(100.0)	(0.0)	(100.0)	(0.0)	(33.3)	(40.0)	(0.0)	(6.7)	(20.0)	(100.0)	(37.5)	(6.3)	(0.0)	(56.3)	(0.0)	(0.0)	(100.0)
판사직권	300	0	300	50	109	115	0	1	6	231	156	75	2	203	1	2	489
	(100.0)	(0.0)	(100.0)	(10.2)	(47.2)	(49.8)	(0.0)	(0.4)	(2.6)	(100.0)	(31.9)	(15.3)	(0.4)	(41.5)	(0.2)	(0.4)	(100.0)
계	2,984	38	3,022	597	1,021	982	0	40	105	2,148	1,582	954	19	2,134	44	10	5,340
	(98.7)	(1.3)	(100.0)	(11.2)	(47.5)	(45.7)	(0.0)	(1.9)	(4.9)	(100.0)	(29.6)	(17.9)	(0.4)	(40.0)	(0.8)	(0.2)	(100.0)

- 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그림 1-3-10]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③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을 보면 전체 청구 건수 151건 중 133건(88.1%)이 인용되었고 18건(11.9%)이 기각되었으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전에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건수는 151건 중 89건(58.9%)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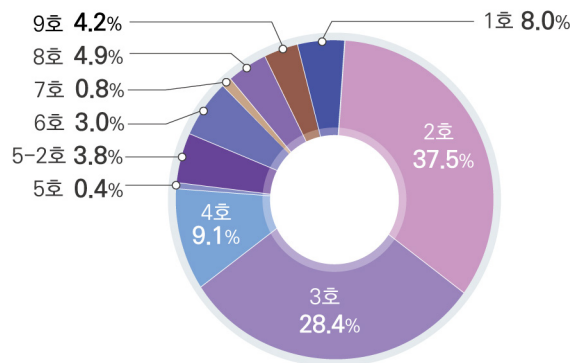
피해아동보호명령 인용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호(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 99건(37.5%)과 3호(전기통신 접근제한) 75건(28.4%)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1-3-27〉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단위 : 건, %)

청구인	인용 건수	기각 건수	총 건수	임시 보호 결정	임시 보호 기각	인용 세부 내용										
						1호	2호	3호	4호	5호	5-2호	6호	7호	8호	9호	계 (중복 집계)
아동본인	3	1	4	1	3	1	3	2	0	0	0	0	0	0	0	6
	(75.0)	(25.0)	(100.0)	(25.0)	(75.0)	(16.7)	(50.0)	(33.3)	(0.0)	(0.0)	(0.0)	(0.0)	(0.0)	(0.0)	(0.0)	(100.0)
판사 직권	2	0	2	2	0	0	1	0	0	0	0	0	1	0	0	2
	(100.0)	(0.0)	(100.0)	(100.0)	(0.0)	(0.0)	(50.0)	(0.0)	(0.0)	(0.0)	(0.0)	(0.0)	(50.0)	(0.0)	(0.0)	(100.0)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	99	15	114	67	47	14	72	58	21	1	10	6	1	12	9	204
	(86.8)	(13.2)	(100.0)	(58.8)	(41.2)	(6.9)	(35.3)	(28.4)	(10.3)	(0.5)	(4.9)	(2.9)	(0.5)	(5.9)	(4.4)	(100.0)
변호사	5	0	5	3	2	0	4	1	1	0	0	2	0	1	0	9
	(100.0)	(0.0)	(100.0)	(60.0)	(40.0)	(0.0)	(44.4)	(11.1)	(11.1)	(0.0)	(0.0)	(22.2)	(0.0)	(11.1)	(0.0)	(100.0)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24	2	26	16	10	6	19	14	2	0	0	0	0	0	2	43
	(92.3)	(7.7)	(100.0)	(61.5)	(38.5)	(14.0)	(44.2)	(32.6)	(4.7)	(0.0)	(0.0)	(0.0)	(0.0)	(0.0)	(4.7)	(100.0)
파악불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133	18	151	89	62	21	99	75	24	1	10	8	2	13	11	264
	(88.1)	(11.9)	(100.0)	(58.9)	(41.1)	(8.0)	(37.5)	(28.4)	(9.1)	(0.4)	(3.8)	(3.0)	(0.8)	(4.9)	(4.2)	(100.0)

- 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2호: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 6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 파악불가의 경우 청구인, 청구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임



[그림 1-3-11]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①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2023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25,739건 중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등의 사건처리 조치를 취한 것은 11,469건(44.6%)이었다. 고소·고발 등 수사가 진행된 경우는 9,984건(87.1%)이었고,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행해진 경우는 1,485건(13.0%)이었다.

〈표 1-3-28〉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1)

(단위 : 건, %)

고소·고발 등 수사진행										수사미진행· 처벌법조치완료		계			
고소		고발		신고 등에 따른 수사		수사기관 인지수사		파악불가						소계	
1,052	(9.2)	191	(1.7)	4,091	(35.7)	4,378	(38.2)	272	(2.4)	9,984	(87.1)	1,485	(13.0)	11,469	(100.0)

※ 신고 등에 따른 수사: 고소·고발 건 및 사법경찰관의 인지수사 이외에 112 신고 또는 유관기관의 수사의뢰 등에 따라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사례

※ 수사기관 인지수사: 고소·고발 건 없이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경우와 처벌법 응급조치 등에 따른 수사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를 포함

※ 수사미진행·처벌법조치완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처분이 행해진 사례

※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생길 수 있음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된 사례에 대하여 파악한 현재까지의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집계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경찰수사 진행중이거나 경찰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송치된 사례는 5,653건(49.3%),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거나 검찰수사를 마치고 법원으로 사건송치된 사례는 1,684건(14.7%),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례는 324건(2.8%), 법원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2,051건(17.9%)이었다.

* 고소·고발 조치의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입력 후 수정·보완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표 1-3-29〉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2)

(단위 : 건, %)

구 분				건수(비율)	
수사기관	경찰수사		수사중	4,051	(35.3)
			사건송치	968	(8.4)
			파악불가	634	(5.5)
	소계			5,653	(49.3)
	검찰수사		수사중	529	(4.6)
			불기소	505	(4.4)
			기소	43	(0.4)
			아동보호사건송치	461	(4.0)
			가정보호사건송치	46	(0.4)
			파악불가	100	(0.9)
소계			1,684	(14.7)	
사법기관	재판진행중		1심 진행중	145	(1.3)
			항소심 진행중	51	(0.4)
			상고심 진행중	1	(0.0)
			파악불가	127	(1.1)
	소계			324	(2.8)
	판결	가정법원	보호처분(아동·가정보호사건)*	1,451	(12.7)
		형사법원	형사처벌**	143	(1.3)
			무죄	18	(0.2)
			공소기각	2	(0.0)
			불처분결정	407	(3.6)
		파악불가		30	(0.3)
	소계			2,051	(17.9)
파악불가***			1,757	(15.3)	
합계			11,469	(100.0)	

*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의미함.

**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사형~몰수),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에 따른 수강명령,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의미함.

***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이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생길 수 있음.

5. 서비스 제공 현황

피해아동이 학대 후유증을 극복,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 피해아동 가족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그리고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는 상담서비스, 입원치료·통원치료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심리검사·미술치료·놀이치료 등을 포함하는 심리치료 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공적지원 연결을 포함하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퇴소 절차 지원, 분리보호 및 절차 지원,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 등을 포함하는 학습 및 보호 지원서비스, 법률자문과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또한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결정, 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를 통해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수탁 프로그램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한 상담 및 교육인 피해아동수탁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표 1-3-30〉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 회)

구 분	2023년 전체 서비스
피해아동	872,694
학대행위자	580,794
부모 및 가족(행위자 제외)	296,634
계	1,750,122

※ 서비스는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 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학습 및 보호 지원서비스, 사건처리, 행위자 수탁프로그램 및 피해아동 수탁프로그램, 기타 등을 포함.

2023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총 872,694회,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580,794회, 피해아동의 비가해 부모 또는 가족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는 총 296,634회였으며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상담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1〉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중복포함)

(단위 : 회, %)

구 분	아 동		행위자		부모 및 가족 (행위자 제외)	
상담	616,414	(70.6)	433,646	(74.7)	235,060	(79.2)
의료지원	4,856	(0.6)	1,002	(0.2)	448	(0.2)
심리치료지원	62,743	(7.2)	29,845	(5.1)	15,101	(5.1)
가족기능강화	93,032	(10.7)	34,419	(5.9)	34,525	(11.6)
학습 및 보호지원	7,741	(0.9)	1,108	(0.2)	448	(0.2)
사건처리지원	39,804	(4.6)	41,579	(7.2)	3,191	(1.1)
행위자수탁프로그램	816	(0.1)	33,824	(5.8)	681	(0.2)
피해아동수탁프로그램	327	(0.0)	87	(0.0)	52	(0.0)
기타	46,961	(5.4)	5,284	(0.9)	7,128	(2.4)
계	872,694	(100.0)	580,794	(100.0)	296,634	(100.0)

6. 재학대 사례

1) 재학대 사례 현황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23년에 신고접수 되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는 총 4,048건*이며, 재학대 아동 명수는 3,121명이다. 2023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25,739건 대비 재학대 사례 비율은 15.7%로 나타났다.

〈표 1-3-32〉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3개년)

(단위 : 건, 명, %)

연 도	재학대 사례 건수	재학대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
2021	5,517	4,176	14.7
2022	4,475	3,469	16.0
2023	4,048	3,121	15.7

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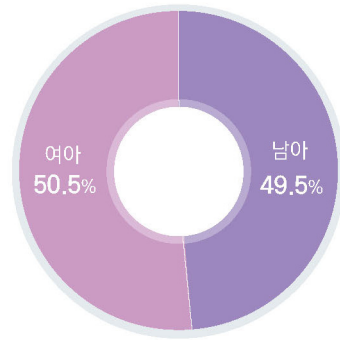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의 경우, 남아 2,003건(49.5%), 여아 2,045건(50.5%)이었다.

〈표 1-3-3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명, %)

성 별	건수(비율)		명수(비율)	
남아	2,003	(49.5)	1,526	(48.9)
여아	2,045	(50.5)	1,595	(51.1)
계	4,048	(100.0)	3,121	(100.0)

* 2023년의 재학대 사례란, 2019년 이후로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가 2023년에 다시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말함.



[그림 1-3-1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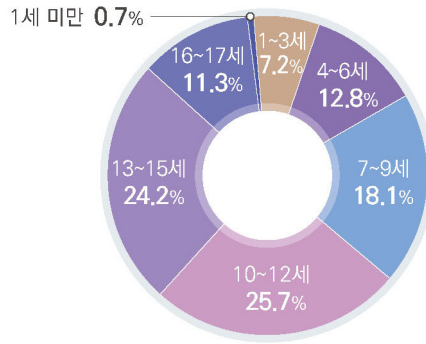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의 경우, 10세~12세가 1,042건(25.7%), 13세~15세 978건(24.2%), 7세~9세 734건(18.1%)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3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명, %)

연 령	건수(비율)		명수(비율)	
1세 미만	29	(0.7)	18	(0.6)
1~3세	291	(7.2)	179	(5.7)
4~6세	518	(12.8)	350	(11.2)
7~9세	734	(18.1)	564	(18.1)
10~12세	1,042	(25.7)	805	(25.8)
13~15세	978	(24.2)	810	(26.0)
16~17세	456	(11.3)	395	(12.7)
계	4,048	(100.0)	3,121	(100.0)



[그림 1-3-1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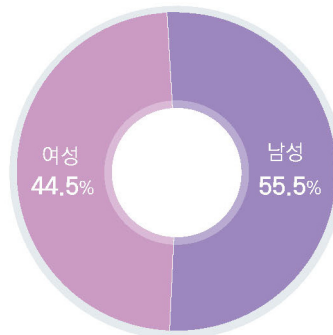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의 경우 남성이 2,245건(55.5%), 여성이 1,803건(44.5%)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표 1-3-3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명, %)

성 별	건수(비율)		명수(비율)	
남성	2,245	(55.5)	1,512	(55.7)
여성	1,803	(44.5)	1,204	(44.3)
계	4,048	(100.0)	2,716	(100.0)



[그림 1-3-1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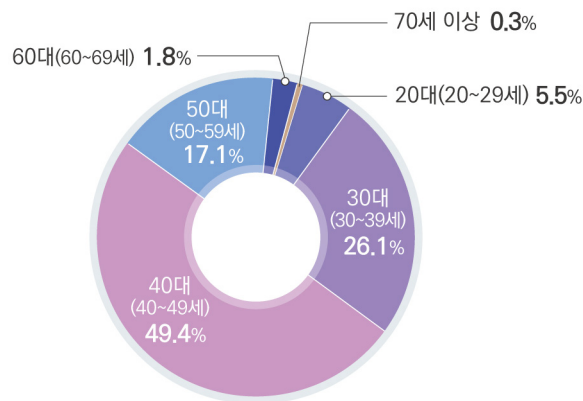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가 1,998건(49.4%)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가 1,055건(26.1%), 50대가 692건(1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3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명, %)

연령	건수(비율)		명수(비율)	
20대 미만	0	(0.0)	0	(0.0)
20대(20~29세)	222	(5.5)	156	(5.7)
30대(30~39세)	1,055	(26.1)	644	(23.7)
40대(40~49세)	1,998	(49.4)	1,345	(49.5)
50대(50~59세)	692	(17.1)	505	(18.6)
60대(60~69세)	71	(1.8)	56	(2.1)
70세 이상	10	(0.3)	10	(0.4)
파악불가	0	(0.0)	0	(0.0)
계	4,048	(100.0)	2,716	(100.0)



[그림 1-3-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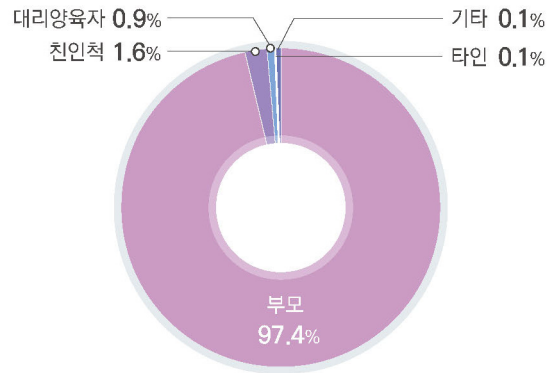
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의 경우,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3,943건(97.4%)으로 월등히 높았다.

〈표 1-3-3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 계		건수(비율)	
부모	친부	2,086	(51.5)
	친모	1,708	(42.2)
	계부	99	(2.5)
	계모	37	(0.9)
	양부	6	(0.2)
	양모	7	(0.2)
	소계	3,943	(97.4)
친인척	친조부	5	(0.1)
	친조모	12	(0.3)
	외조부	5	(0.1)
	외조모	18	(0.4)
	친인척	18	(0.4)
	형제, 자매	6	(0.2)
	소계	64	(1.6)
대리양육자	부, 모의 동거인	20	(0.5)
	유치원교직원	1	(0.0)
	초·중·고교 직원	2	(0.1)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0	(0.0)
	보육교직원	8	(0.2)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	(0.1)
	기타시설 종사자	1	(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0	(0.0)
	위탁부	0	(0.0)
	위탁모	0	(0.0)
	아이돌보미	0	(0.0)
	소계	36	(0.9)
타인	이웃	0	(0.0)
	낯선사람	2	(0.1)
	소계	2	(0.1)
기타		3	(0.1)
계		4,048	(100.0)



[그림 1-3-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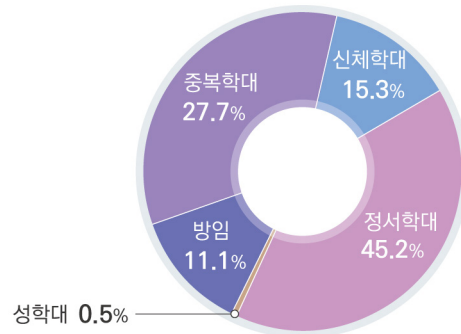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

재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경우 정서학대 1,831건(45.2%), 중박학대가 1,123건(27.7%), 신체학대 621건(15.3%), 방임 451건(11.1%), 성학대 22건(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38〉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621	(15.3)
정서학대	1,831	(45.2)
성 학 대	22	(0.5)
방 임	451	(11.1)
중박학대	1,123	(27.7)
계	4,048	(100.0)



[그림 1-3-17]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

6)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황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2023년에 발생한 재학대 사례 4,048건을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전체 상황을 보호조치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분리된 이후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였다.

〈표 1-3-39〉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 보호조치 유형별

(단위 : 건, %)

피해아동 상황		
원가정보호(보호체계 유지)	3,365	(83.1)
분리보호(보호체계 변경)	662	(16.4)
기타	21	(0.5)
계	4,048	(100.0)

- 원가정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경우
- 분리보호 :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다른 누군가(예: 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 모두 해당
- 기타 : 소년원 입소, 행방불명(예: 가출 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의 분리보호 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한 번이라도 분리된 경험이 있는 재학대 사례의 최초조치를 분리유형으로 살펴보니 시설입소하여 보호하는 경우가 8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밖에 친족보호 9.4%, 가정위탁 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40〉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 분리보호 유형별

(단위: 건, %)

분리보호 (보호체계 변경)	친족보호	62	(9.4)
	가정위탁	10	(1.5)
	시설입소	581	(87.8)
	입양	0	(0.0)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9	(1.4)
계		662	(100.0)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의 분리보호가 된 사례의 최종조치 상황을 살펴보았다. 분리보호 된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662건 중 90건(13.6%)은 가정복귀 하였고, 572건(86.4%)의 아동은 계속 분리보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4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 분리보호 후 보호 상황

(단위: 건, %)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90	(13.6)
분리보호 (지속)	친족보호	65	(9.8)
	가정위탁	12	(1.8)
	시설입소	484	(73.1)
	입양	0	(0.0)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11	(1.7)
	소계	572	(86.4)
계		662	(100.0)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상황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등의 사건처리 조치를 취한 것은 1,873건으로 나타났다.

〈표 1-3-4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상황

(단위: 건)

재학대 사례 건수	사건처리	사례관리
4,048	1,873	2,175

제4절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023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22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 신고접수 건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접수 건수는 지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4-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연도	구분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사례		계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38,380	(92.7)	449	(1.1)	2,560	(6.2)	0	(0.0)	41,389	(100.0)	13.7
2020년		38,929	(92.1)	557	(1.3)	2,761	(6.5)	4	(0.0)	42,251	(100.0)	2.1
2021년		52,083	(96.6)	768	(1.4)	1,077	(2.0)	4	(0.0)	53,932	(100.0)	27.6
2022년		44,531	(96.6)	711	(1.5)	861	(1.9)	0	(0.0)	46,103	(100.0)	-14.5
2023년		45,771	(94.3)	75	(1.6)	1,997	(4.1)	1	(0.0)	48,522	(100.0)	5.2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아동학대의심사례 기준)는 2020년 10,973건(28.2%), 2021년 23,372건(44.9%), 2022년 16,149건(36.3%)에서 2023년 12,553건(27.4%)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을 제외하고는 초·중·고교 직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비신고의무자 직군의 신고 분포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부모에 의한 신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내용(동일시점 및 동일행위)에 대한 신고가 다른 신고자를 통해 접수

〈표 1-4-2〉 연도별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신고자 유형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 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5,901	3,805	6,065	6,370	5,307
			(15.4)	(9.9)	(11.6)	(14.3)	(11.6)
	의료인·의료기사		293	363	549	424	447
			(0.8)	(0.9)	(1.1)	(1.0)	(1.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37	711	702	490	577
			(0.9)	(1.8)	(1.3)	(1.1)	(1.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38	46	47	48	48
			(0.1)	(0.1)	(0.1)	(0.1)	(0.1)
	보육교직원		448	182	241	223	160
			(1.2)	(0.5)	(0.5)	(0.5)	(0.4)
	유치원교직원·강사		140	140	216	208	178
			(0.4)	(0.4)	(0.4)	(0.5)	(0.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32	42	35	35	46
			(0.1)	(0.1)	(0.1)	(0.1)	(0.1)
	소방구급대원		32	25	36	62	42
			(0.1)	(0.1)	(0.1)	(0.1)	(0.1)
	성매매피해시설 종사자		4	3	1	1	2
			(0.0)	(0.0)	(0.0)	(0.0)	(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16	30	26	5	10
			(0.0)	(0.1)	(0.0)	(0.0)	(0.0)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125	210	79	68	84
			(0.3)	(0.5)	(0.2)	(0.2)	(0.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66	347	230	172	158
			(0.7)	(0.9)	(0.4)	(0.4)	(0.4)
	아동권리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26	51	45	22	22
			(0.1)	(0.1)	(0.1)	(0.0)	(0.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0	632	7,493	4,492	2,330
			(0.0)	(1.6)	(14.4)	(10.1)	(5.1)
	아동복지전담공무원		200	984	1,097	2,060	2,103
			(0.5)	(2.5)	(2.1)	(4.6)	(4.6)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0	2,394	5,785	898	621
			(0.0)	(6.1)	(11.1)	(2.0)	(1.4)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67	91	54	56	29
			(0.2)	(0.2)	(0.1)	(0.1)	(0.1)

신고자 유형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82	61	53	48	24
			(0.2)	(0.2)	(0.1)	(0.1)	(0.1)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63	65	59	33	30
			(0.2)	(0.2)	(0.1)	(0.1)	(0.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종사자·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종사자		128	83	46	42	25
			(0.3)	(0.2)	(0.1)	(0.1)	(0.1)
	응급구조사		1	1	3	6	1
			(0.0)	(0.0)	(0.0)	(0.0)	(0.0)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286	280	212	130	109
			(0.7)	(0.7)	(0.4)	(0.3)	(0.2)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105	87	117	100	112
			(0.3)	(0.2)	(0.2)	(0.2)	(0.2)
	아이돌보미		11	21	26	34	20
			(0.0)	(0.1)	(0.0)	(0.1)	(0.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225	308	139	114	65
			(0.6)	(0.8)	(0.3)	(0.3)	(0.1)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9	10	10	6	2
			(0.0)	(0.0)	(0.0)	(0.0)	(0.0)
	입양기관 종사자		1	1	6	2	1
			(0.0)	(0.0)	(0.0)	(0.0)	(0.0)
	소 계		8,836	10,973	23,372	16,149	12,553
			(23.0)	(28.2)	(44.9)	(36.3)	(27.4)
비 신 고 의 무 자	아동본인		4,752	5,533	8,966	9,488	11,399
			(12.4)	(14.2)	(17.2)	(21.3)	(24.9)
	부모		6,506	6,284	10,631	10,779	13,946
			(17.0)	(16.1)	(20.4)	(24.2)	(30.5)
	형제, 자매		307	443	657	713	782
			(0.8)	(1.1)	(1.3)	(1.6)	(1.7)
	친인척		647	653	786	666	688
			(1.7)	(1.7)	(1.5)	(1.5)	(1.5)
	이웃·친구		1,718	1,945	3,660	2,760	3,079
			(4.5)	(5.0)	(7.0)	(6.2)	(6.7)
	경찰		291	216	243	241	276
			(0.8)	(0.6)	(0.5)	(0.5)	(0.6)

신고자 유형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종교인		24	28	23	11	11
		(0.1)	(0.1)	(0.0)	(0.0)	(0.0)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959	367	239	215	355
		(2.5)	(0.9)	(0.5)	(0.5)	(0.8)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12,389	10,254	0	0	6
		(32.3)	(26.3)	(0.0)	(0.0)	(0.0)
의료사회복지사		25	39	32	7	6
		(0.1)	(0.1)	(0.1)	(0.0)	(0.0)
낮선사람		597	611	1,138	783	962
		(1.6)	(1.6)	(2.2)	(1.8)	(2.1)
익명		275	401	729	850	252
		(0.7)	(1.0)	(1.4)	(1.9)	(0.6)
법원		68	55	103	110	55
		(0.2)	(0.1)	(0.2)	(0.2)	(0.1)
기타		986	1,127	1,504	1,759	1,407
		(2.6)	(2.9)	(2.9)	(4.0)	(3.1)
소 계		29,544	27,956	28,711	28,382	33,218
		(77.0)	(71.8)	(55.1)	(63.7)	(72.6)
계		38,380	38,929	52,083	44,531	45,771
		(100.0)	(100.0)	(100.0)	(100.0)	(100.0)

- ※ 2009년부터 유치원교직원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시설종사자 항목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로 구분하여 집계함.
- ※ 2012년 8월 5일, 전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가 추가됨(아동복지법 제25조 의거)
- ※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이 추가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의거)
- ※ 2016년 11월 30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입양기관 종사자가 추가됨.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종사자가 통합되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의거)
- ※ 2016년 9월 23일,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 속하였으나, 이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6.11.30.시행)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제외됨.
- ※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7항에 규정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삭제로 인해 기존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항목을 삭제하고 비신고의무자의 사회복지관련종사자 항목에 통합하였음.
- ※ 2019.7.16.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 되므로 아동권리보장원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항목에 통합하였음.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시행일(2020.10.1.)부터 신고의무자로 변경됨.

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2019년 30,045건, 2020년 30,905건, 2021년 37,605건, 2022년 27,971건, 2023년 25,739건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2019년 67개소, 2020년 71개소, 2021년 77개소, 2022년 85개소, 2023년 92개소로 나타났다.

〈표 1-4-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 건, %, 개소)

구분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아동학대사례	건수	30,045	30,905	37,605	27,971	25,739
	증가율	22.1	2.9	21.7	-25.6	-8.0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수	67	71	77	85	92
	증가 기관수	5	4	6	8	7

4)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추계 아동 인구(0세~17세)를 기준으로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을 살펴보면 2019년 3.81%, 2020년 4.02%, 2021년 5.02%, 2022년 3.85%, 2023년 3.64%로 나타났다.

〈표 1-4-4〉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 명, 건, %)

구분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계아동인구* (0~17세)	7,888,218	7,678,893	7,487,738	7,256,021	7,069,296
아동학대사례	30,045	30,905	37,605	27,971	25,739
피해아동 발견율	3.81	4.02	5.02	3.85	3.64

* 2019년~2023년 발견율의 경우 통계청의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를 활용하였음.

5) 연도별 아동학대사태 유형

연도별 아동학대사태 유형별 분류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중복학대가,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정서학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4-5〉 연도별 아동학대사태 유형

(단위 : 건, %)

학대유형 연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 대		방 임		중복학대		계	
2019년	4,179	(13.9)	7,622	(25.4)	883	(2.9)	2,885	(9.6)	14,476	(48.2)	30,045	(100.0)
2020년	3,807	(12.3)	8,732	(28.3)	695	(2.2)	2,737	(8.9)	14,934	(48.3)	30,905	(100.0)
2021년	5,780	(15.4)	12,351	(32.8)	655	(1.7)	2,793	(7.4)	16,026	(42.6)	37,605	(100.0)
2022년	4,911	(17.6)	10,632	(38.0)	609	(2.2)	2,044	(7.3)	9,775	(34.9)	27,971	(100.0)
2023년	4,698	(18.3)	11,094	(43.1)	585	(2.3)	1,979	(7.7)	7,383	(28.7)	25,739	(100.0)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4-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관계						
부 모	친부	12,371	13,471	16,944	12,796	12,414
		(41.2)	(43.6)	(45.1)	(45.7)	(48.2)
	친모	9,342	10,945	13,380	9,562	8,921
		(31.1)	(35.4)	(35.6)	(34.2)	(34.7)
	계부	557	578	702	511	511
		(1.9)	(1.9)	(1.9)	(1.8)	(2.0)
	계모	336	312	340	201	220
		(1.1)	(1.0)	(0.9)	(0.7)	(0.9)
	양부	58	40	68	29	24
		(0.2)	(0.1)	(0.2)	(0.1)	(0.1)
친 인 척	친조부	194	231	193	114	103
		(0.6)	(0.7)	(0.5)	(0.4)	(0.4)
	친조모	304	374	383	215	146
		(1.0)	(1.2)	(1.0)	(0.8)	(0.6)
	외조부	76	131	99	68	81
		(0.3)	(0.4)	(0.3)	(0.2)	(0.3)
	외조모	143	230	177	112	118
		(0.5)	(0.7)	(0.5)	(0.4)	(0.5)
	친인척	390	429	435	246	209
		(1.3)	(1.4)	(1.2)	(0.9)	(0.8)
	형제, 자매	225	266	230	124	114
		(0.7)	(0.9)	(0.6)	(0.4)	(0.4)
	소계	1,332	1,661	1,517	879	771
		(4.4)	(5.4)	(4.0)	(3.1)	(3.0)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관계						
대 리 양 육 자	부, 모의 동거인	363 (1.2)	444 (1.4)	403 (1.1)	193 (0.7)	190 (0.7)
	유치원교직원	155 (0.5)	118 (0.4)	140 (0.4)	100 (0.4)	59 (0.2)
	초·중·고교 직원	2,154 (7.2)	882 (2.9)	1,089 (2.9)	1,602 (5.7)	793 (3.1)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320 (1.1)	208 (0.7)	319 (0.8)	254 (0.9)	259 (1.0)
	보육교직원	1,384 (4.6)	634 (2.1)	1,221 (3.2)	600 (2.1)	356 (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08 (1.4)	556 (1.8)	217 (0.6)	175 (0.6)	129 (0.5)
	기타시설 종사자	63 (0.2)	12 (0.0)	93 (0.2)	69 (0.2)	50 (0.2)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87 (0.3)	14 (0.0)	58 (0.2)	8 (0.0)	3 (0.0)
	위탁부	3 (0.0)	4 (0.0)	6 (0.0)	2 (0.0)	2 (0.0)
	위탁모	8 (0.0)	16 (0.1)	17 (0.0)	9 (0.0)	3 (0.0)
	아이돌보미	41 (0.1)	42 (0.1)	46 (0.1)	35 (0.1)	30 (0.1)
	소계	4,986 (16.6)	2,930 (9.5)	3,609 (9.6)	3,047 (10.9)	1,874 (7.3)
타 인	이웃	224 (0.7)	211 (0.7)	200 (0.5)	119 (0.4)	178 (0.7)
	낯선사람	439 (1.5)	354 (1.1)	458 (1.2)	454 (1.6)	668 (2.6)
	소계	663 (2.2)	565 (1.8)	658 (1.7)	573 (2.0)	846 (3.3)
기타		364 (1.2)	369 (1.2)	335 (0.9)	353 (1.3)	142 (0.6)
계		30,045 (100.0)	30,905 (100.0)	37,605 (100.0)	27,971 (100.0)	25,739 (100.0)

※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발생할 수 있음.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가족유형이 친부모가정 형태인 경우가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1-4-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가족유형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친부모가정	17,324	18,059	23,838	18,152	17,218
	(57.7)	(58.4)	(63.4)	(64.9)	(66.9)
부자가정	3,311	3,521	3,707	2,526	2,168
	(11.0)	(11.4)	(9.9)	(9.0)	(8.4)
모자가정	3,621	3,977	4,618	3,713	3,171
	(12.1)	(12.9)	(12.3)	(13.3)	(12.3)
미혼부·모가정	424	487	506	443	383
	(1.4)	(1.6)	(1.3)	(1.6)	(1.5)
재혼가정	1,627	1,686	1,980	1,369	1,298
	(5.4)	(5.5)	(5.3)	(4.9)	(5.0)
친인척보호	583	582	443	217	232
	(1.9)	(1.9)	(1.2)	(0.8)	(0.9)
동거(사실혼포함)	565	668	644	343	296
	(1.9)	(2.2)	(1.7)	(1.2)	(1.2)
소년소녀가정	15	0	0	0	0
	(0.0)	(0.0)	(0.0)	(0.0)	(0.0)
가정위탁	23	69	90	80	43
	(0.1)	(0.2)	(0.2)	(0.3)	(0.2)
입양가정	84	66	117	76	46
	(0.3)	(0.2)	(0.3)	(0.3)	(0.2)
시설보호	265	340	169	164	122
	(0.9)	(1.1)	(0.4)	(0.6)	(0.5)
기타	2,203	1,450	1,493	888	762
	(7.3)	(4.7)	(4.0)	(3.2)	(3.0)
계	30,045	30,905	37,605	27,971	25,739
	(100.0)	(100.0)	(100.0)	(100.0)	(100.0)

제2장

아동학대 사례분석

제1절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

제2장 아동학대 사례분석

제1절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

1. 아동학대 사망사례 현황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은 총 44명으로, 전체 학대 피해아동의 약 0.22%이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사망 아동은 아동학대 사망으로 신고접수된 아동과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사망으로 집계된 아동,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된 사망 아동까지 포함하였다.

〈표 2-1-1〉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 현황

(단위 : 명, %)

연도	사망아동 인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명수 중 사망아동 명수 비율
2019	42	0.19
2020	43	0.19
2021	40	0.15
2022	50	0.23
2023	44	0.22

※ 아동학대 사망사례 추출기준

- 아동학대 사망으로 신고접수된 아동과 경찰로부터 집계한 사망 아동, 기타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 사망 아동 중 사망일이 2023년(1.1~12.31)인 아동학대 사망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개입 사례, 개입 이력 없이 사망신고를 통해 최초 인지한 사례를 모두 포함하였음
- 타 기관과 집계기준(죄명, 행위자 등) 차이로 통계치가 상이할 수 있음

1)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일반적 특성

가. 사망사례 피해아동 성별

사망사례 피해아동 성별은 남아가 26명(59.1%), 여아가 18명(40.9%)이다.

〈표 2-1-2〉 사망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성별	남아	26	59.1
	여아	18	40.9
총계		44	100.0

나. 사망사례 피해아동 연령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연령은 1세 미만이 10명(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세와 5세가 각각 5명(1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6세 이하 영유아는 27명으로 영유아가 아동학대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61.4%를 차지하였다.

〈표 2-1-3〉 사망사례 피해아동 연령

(단위 :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연령	1세 미만	10	22.7
	1세	2	4.5
	2세	1	2.3
	3세	5	11.4
	4세	3	6.8
	5세	5	11.4
	6세	1	2.3
	7세	2	4.5
	8세	4	9.1
	9세	1	2.3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10세	0	0.0
	11세	1	2.3
	12세	1	2.3
	13세	1	2.3
	14세	3	6.8
	15세	1	2.3
	16세	2	4.5
	17세	1	2.3
총계		44	100.0

다. 사망사례 피해아동 교육기관

사망사례 피해아동 중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은 아동이 11명(25.0%)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7명(15.9%), 초등학교 6명(13.6%), 중학교 5명(11.4%), 고등학교 3명(6.8%) 순이었다. 파악이 안 되는 아동은 12명(27.3%)이었다.

〈표 2-1-4〉 사망사례 피해아동 교육기관

(단위 :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교육기관	다니지 않음	11	25.0
	어린이집	4	9.1
	유치원	3	6.8
	초등학교	6	13.6
	중학교	5	11.4
	고등학교	3	6.8
	대안학교	0	0.0
	기타	0	0.0
	파악안됨	12	27.3
총계		44	100.0

라.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정 34명(77.3%)으로 가장 많았으며,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자가정과 미혼부·모가정가정을 합쳐 9명(20.4%)이었다. 이 외에 동거 가정(사실혼 포함)이 1명(2.3%)이다.

〈표 2-1-5〉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가족유형	친부모가정	34 77.3
	부자가정	1 2.3
	모자가정	6 13.6
	미혼부·모가정	2 4.5
	재혼가정	0 0.0
	친인척보호	0 0.0
	동거(사실혼 포함)	1 2.3
	가정위탁	0 0.0
	입양가정	0 0.0
	시설보호	0 0.0
	기타	0 0.0
총계		44 100.0

- 친부모가정: 혼인절차에 의한 부모와 부모 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부자·모자가정: 부모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미혼부·모가정: 혼인절차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재혼가정: 이혼 혹은 사별 이후 혼인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가족 형태
- 친인척보호가정: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게 보호되는 가족 형태
- 동거(사실혼 포함): 혼인신고 없이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형태
- 가정위탁: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형태
- 입양가정: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모-양자의 관계를 맺은 가족 형태
- 시설보호: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형태

2)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일반적 특성

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42명* 중 23명(54.8%)은 여성이었고, 19명(45.2%)은 남성이었다.

〈표 2-1-6〉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학대행위자 성별	남성	19	45.2
	여성	23	54.8
총계		42	100.0

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연령대는 20~40대가 90.5%로, 이 가운데 30대가 15명(35.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는 12명(28.6%), 20대 11명(26.2%)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는 3명(7.1%)이고, 60대는 1명(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학대행위자 연령	20대 미만	0	0.0
	20대(20 ~ 29세)	11	26.2
	30대(30 ~ 39세)	15	35.7
	40대(40 ~ 49세)	12	28.6
	50대(50 ~ 59세)	3	7.1
	60대(60 ~ 69세)	1	2.4
	70세 이상	0	0.0
	파악안됨	0	0.0
총계		42	100.0

* 하나의 사례에 행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아동이 2명 이상 있는 경우가 있어 아동학대 사망 피해아동 44명보다 적은 42명임

3)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 여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총 42명 중 39명(92.9%)이 피해아동과 동거 중이었고, 3명(7.1%)이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동거 여부	동거	39	92.9
	비동거	3	7.1
	파악안됨	0	0.0
총계		42	100.0

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36명(85.7%)으로, 이중 친모가 19명(45.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친부가 16명(38.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학대행위자 중 친인척은 2명(4.8%)이었으며, 대리양육자 중 부, 모의 동거인이 3명(7.1%), 기타시설 종사자가 1명(2.4%)이었다.

〈표 2-1-9〉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단위 : 명, %)

관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부모	친부	16
	친모	19
	계부	0
	계모	1
	양부	0
	양모	0
	소계	36
친인척	친조부	1
	친조모	1
	외조부	0
	외조모	0
	친인척	0
	형제, 자매	0
	소계	2
대리양육자	부, 모의 동거인	3
	유치원교직원	0
	초·중·고교 직원	0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0
	보육교직원	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0
	기타시설 종사자	1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0
	위탁부	0
	위탁모	0
	아이돌보미	0
	소계	4
타인	이웃	0
	낯선사람	0
	소계	0
기타		0
총계		42
		100.0

4) 사망사례 발생 현황

가. 사망사례 지역별 발생 현황*

지역별 사망사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각각 10명(22.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8명(18.2%), 경상남도 3명(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10〉 사망사례 지역별 발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시·도명	서울특별시	2	4.5
	부산광역시	1	2.3
	대구광역시	1	2.3
	인천광역시	10	22.7
	광주광역시	1	2.3
	대전광역시	2	4.5
	울산광역시	8	18.2
	세종특별자치시	0	0.0
	경기도	10	22.7
	강원특별자치도	0	0.0
	충청북도	2	4.5
	충청남도	1	2.3
	전북특별자치도	2	4.5
	전라남도	0	0.0
	경상북도	0	0.0
	경상남도	3	6.8
	제주특별자치도	1	2.3
	총계		44

* 실제 사망 발생지와 피해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다를 수 있음.

나. 사망사례 신고자 유형

사망사례 신고는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14명(31.8%)이었고,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30명(68.2%)으로 나타났다.

〈표 2-1-11〉 사망사례 신고자 유형

(단위 :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14	31.8
	비신고의무자	30	68.2
총계		44	100.0

5) 사망사례 아동학대 유형*

지자체에서 판단한 사망사례의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가 26명(61.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방임이 10명(23.8%)으로 나타났다.

〈표 2-1-12〉 사망사례 아동학대 유형

(단위 :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신체학대	26	61.9
정서학대	0	0.0
성학대	0	0.0
방임	10	23.8
신체학대·정서학대	1	2.4
신체학대·성학대	0	0.0
신체학대·방임	3	7.1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0	0.0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2	4.8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0	0.0
정서학대·성학대	0	0.0
정서학대·방임	0	0.0
정서학대·성학대·방임	0	0.0
성학대·방임	0	0.0
총계	42	100.0

6)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사건처리) 결과**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사건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학대행위자 12명(28.6%)은 재판 중에 있으며, 8명(19.0%)은 불송치, 6명(14.3%)은 입건 전 조사종결, 5명(11.9%)은 수사 중이었다. 한편, 7명(16.7%)의 학대행위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학대행위자들은 5년 초과~10년 이하가 5명(11.9%)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1년 초과~5년 이하, 30년 초과~무기징역은 각 1명(2.4%)이었다.

* 지자체에서의 사례판단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재판에서 확정된 죄명과는 다를 수 있음.

** 2024. 7. 1. 수사결과 조회 또는 확인 기준

〈표 2-1-13〉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사건처리) 결과

(단위 :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입건 전 조사종결(중지, 이송 등 포함)*		6	14.3
불송치**		8	19.0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2	4.8
기소중지		0	0.0
수사 중		5	11.9
재판 중		12	28.6
선고유예***		0	0.0
집행유예****		0	0.0
징역형	1년 초과~5년 이하	1	2.4
	5년 초과~10년 이하	5	11.9
	10년 초과~15년 이하	0	0.0
	15년 초과~20년 이하	0	0.0
	20년 초과~25년 이하	0	0.0
	25년 초과~30년 이하	0	0.0
	30년 초과~무기징역	1	2.4
기타		2	4.8
총계		42	100.0

*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의 개시 여부 결정 및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의 약칭을 종전의 “내사”에서 “입건 전 조사”로 변경함(「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등 참조)

**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2) 죄가안됨, 3) 공소권 없음, 4) 각하 등의 사유로 송치하지 아니한 사건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양형의 사항을 고려하여 뇌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양형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참고문헌 부 록

참고문헌

- 강현아, 정익중, 장화정, 강현주, 심의선, 최윤희. (2019).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유형 및 특성. *한국아동복지학*, (68), 51-86.
- Lawrence, R. (2004). Understanding fatal assault of children: a typology and explanatory theor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6(9), 837-852.
- Palusci, V. J., & Covington, T. M. (2014). Child maltreatment deaths in the U.S. National Child Death Review Case Reporting System. *Child Abuse & Neglect*, 38, 25-36.
- Welch, G.L., Bonner, B. (2013). Fatal child neglect: Characteristics, causation, and strategies for prevention. *Child Abuse & Neglect*, 37, 745-752.

부록

1. 용어 설명

[일반사항]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자(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제1조)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8호) 혹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6항)

(아동)학대행위자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5호),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에 따라 아동을 가해한 자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개정(안)(2019.7.16. 시행)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됨.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조사 공공화 시행(2020.10.1.)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는 지자체에서 수행함

[신고접수]

신고접수(사례) :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로 해당 사례들은 신고접수를 받은 후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함

일반상담(사례) :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성인이 아닌 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정보 부족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례

동일신고(사례) : 최초 신고접수 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이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접수 되는 사례

재학대 :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기준연도에 신고접수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자로 신고의무자에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 구급대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장과 종사자등 26개 직군이 포함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

[아동학대조사 및 사례판단]

아동학대조사 :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사례판단 : 아동학대조사를 통해 수집된 아동학대사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사례, 조기자원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및 결정하는 과정. 2020년 10월 1일 이후로 조기자원사례는 일반사례로 분류됨

아동학대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고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또는 진술이 뒷받침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일반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

친부모가정 : 혼인절차에 의한 부모와 부모 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부자·모자 가정 : 부모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미혼부·모 가정 : 혼인절차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재혼가정 : 이혼 혹은 사별 이후 혼인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가족 형태

친인척보호가정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게 보호되는 가족 형태

동거(사실혼 포함) 가정 : 혼인신고 없이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형태

가정위탁 :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형태

입양가정 :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모-양자의 관계를 맺은 가족 형태

시설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형태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계부·계모 : 재혼을 통하여 맺어진 부 또는 모

양부·양모 : 입양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위탁부·위탁모 :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등이 포함됨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함. 성기노출, 신체 및 성기 추행, 성기삽입,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됨

중복학대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형의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조치결과관리]

조치결과 : 사례판단을 근거로 피해아동의 안전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피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정을 취하는 것

응급조치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범죄현장에 출동 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현저·급박한 경우 피해아동 등에 대하여 즉시 취할 수 있는 긴급 조치

임시조치 :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하는 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 피해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조치, 응급조치 이후 피해아동 분리보호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청구함

임시보호명령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의 결정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로 피해아동보호명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원가정보호 : 생물학적·법적 친권자 및 양육권자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양육하는 주양육자가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 아동복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분리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

가정 복귀 : 아동학대로 분리보호 된 아동을 다시 원가정으로 배치하는 것

사망사례 :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고소 : 범죄 피해자 및 그의 법정 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사건처리 : 고소, 고발, 인지수사, 특례법 임시조치 등 수사진행 및 수사 미진행 모두를 포함한 아동학대 사법절차를 의미함

보호처분 : 사회보호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을 부과하는 것

형사처분 :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 즉 구류, 금고, 징역 등을 부과하는 것

[서비스제공]

상담서비스 : 상담서비스, 집단상담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실시한 기관상담서비스, 주변인과 실시한 상담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의료지원 :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포함한 서비스

심리치료지원 : 심리검사,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을 포함한 서비스

가족기능강화 :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 공적지원 연결을 포함한 서비스

학습 및 보호지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입·퇴소 및 절차지원,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및 절차지원,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을 포함하는 서비스

사건처리지원 : 학대행위자가 고소·고발 또는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으로 사건처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

행위자수탁프로그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 결정을 받아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피해아동수탁프로그램 :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례종결 :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